

보도 일시	2022. 12. 23.(금) 본회의 의결시	배포 일시	2022. 12. 23.(금) 21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세제실	책임자	과 장 배정훈 (044-215-4110)
	조세정책과	담당자	서기관 백경원 (kwbaik84@korea.kr)

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

□ 22.12.23(금)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

○ 정부가 9.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

국세기본법

- 경·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낮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
-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·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* 조정
* (현행) 2천만원 → (정부안) 1억원 → (수정) 5천만원

국세징수법

-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(단,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*),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
*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

소득세법

-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(종목당 10억원 이상 등) 현행 유지
-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
* (정부안) 가산세 유예기간 6개월(소규모사업자 1년)
(수 정) 가산세 유예기간 1년(소규모사업자 2년)

법인세법

-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%p씩 하향 조정*
* (현행) 10/20/22/25% → (정부안) 10(중소·중견기업)/20/22% → (수정) 9/19/21/24%
- 국내자회사의 지분율 20~30%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상향 조정
* (정부안) <지분율50%이상> 익금불산입률 100% <30%~50%> 80% <30%미만> 30%
(수 정) <지분율50%이상> 익금불산입률 100% <20%~50%> 80% <20%미만> 30%
-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
* '24.1.1. 이후 시행, 소득세법·조세특례제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-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* 및 공제한도** 조정
* 적용대상 중견기업: (정부안) 매출액 1조원 미만 → (개정) 매출액 5천억원 미만
** (정부안) 업력 10년 이상 400/20년 이상 600/30년 이상 1,000억원 → (수정) 300/400/600억원
- 상속세 과세방식이 전환(비과세→징수유예)된 국가지정문화재 등* 보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허용 및 신고 의무 부여(위반시 가산세)
* 국가지정문화재,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
-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* 기업의 범위 조정
* (현행) 중소기업 → (정부안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
→ (수정)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

종합부동산세법

-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증과 세율 폐지
-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증과 세율 조정*
* (정부안) 1.3~2.7% → (수정) 3주택 이상 2.0~5.0%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
-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 -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,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

조세특례제한법

- 1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
 - * (현행) 5년 → (정부안) 적용기간 폐지 → (수정) 20년
- 2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(감가상각 기간 단축) 특례 신설
 - * '23.1.1.~12.31.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적용
-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
 - * (현행) 연 150만원 → (개정) 연 200만원
-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
 - * (정부안) 50% 이하 → (수정) 50%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
-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* 및 한도** 조정
 - * 적용대상 중견기업 : (정부안) 매출액 1조원 미만 → (수정) 매출액 5천억원 미만
 - ** (정부안) 업력 10년 이상 400/20년 이상 600/30년 이상 1,000억원 → (수정) 300/400/600억원
-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* 대상에 체육단체** 추가
 - * 수익사업소득 100%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
 - **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해 특례 적용
- 7 청년도약계좌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도입
- 8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*
 - *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: (현행) 10% → (정부안) 12% → (수정) 15%
 -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: (현행) 12% → (정부안) 15% → (수정) 17%

- 9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도시지역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* 신설

*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
- 10 투자-상생협력촉진세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적용하고, 적용기한 3년 연장
- 11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- 1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기 시행
 - * (정부안) '23.4.1. 이후 적용 → (수정) '23.1.1. 이후 적용
- 1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·법인세 감면(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) 신설
- 14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*(100만원 한도)
 - *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%를 추가 소득공제

※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. (044-215-내선번호)

- 소득세제(4211~3, 4215~4218), 금융세제(4231, 4233, 4236), 법인세제(4221~4, 4226), 상속증여세·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(4311~4, 4316~8), 부가가치세제(4321~3, 4326), 개별소비세·주세(4331, 4333, 4336), 국제조세(4241, 4243, 4246, 4252, 4253), 관세(4411~3, 4416, 4431~3), 국세기본법·국세징수법·조세범처벌절차법(4151, 4152, 4154), 조세특례(4131~3, 4136), 소득과약(4371, 4373)

참 고

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

국세기본법

①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,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(국기법 §35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경·공매시 국세와 저당권,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○ (당해세 우선)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중세 및 종부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○ (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*에 따라 집행 중 * 제3자에 해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체납이 없다면 양수인(제3자)의 조세 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(원칙)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ii) (예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 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▪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<input type="checkbox"/> 당해세 적용 예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,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님

< 수정이유 >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

< 시행시기 > '23.4.1. 이후 매각결정(공매) 또는 매각허가 결정(경매) 하는 분부터 적용

②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(국기법 §88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세무공무원 질문*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기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개별 세법의 질문·조사권 근거 ○ (과태료 상한) 2천만원 이하 → 1억원 이하 	<input type="checkbox"/>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2천만원 이하 → 5천만원 이하

< 수정이유 > 점진적 인상 추진

< 시행시기 > '23.1.1.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

국세징수법

①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(국정법 §109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① (열람권자)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② (열람대상)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③ (열람절차) ⁱ⁾ 임대차계약전에 ⁱⁱ⁾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ⁱⁱⁱ⁾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<div style="border-left: 1px solid black; border-right: 1px solid black; padding: 0 10px; margin: 0 10px;"> ○ (좌 동) </div> ③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i) 열람기간: 임대차계약 전 → 임대차개시일까지 ii) 예외신설 ▪ (원칙)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▪ (예외)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* *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(시행령)인 경우는 제외 iii) 열람기관: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→ 전국 세무서 iv) 통지의무 신설: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

< 수정이유 >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 강화

< 시행시기 > '23.4.1.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②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사용 근거 규정 마련
(국정법 §111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채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○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○ (좌 동) ○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

< 수정이유 >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

< 시행시기 > '25.1.1. 이후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

소득세법

①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(종목당 10억원이상 등) **현행 유지**
(소득법 §94·104·115·118의9, 소득령 §157·167의8·168·169·178의8·225의2 등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주식 '고액주주' 과세기준 완화 *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주식 '대주주' 과세기준 (종목당 10억원 이상 등) 현행 유지 *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납세협력부담 완화
(소득법 §81의11, 법인법 §75의7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○ (적용내용)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○ (적용대상) '24.1.1.~'24.6.30.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- 소규모사업자*의 경우 '24.1.1.~'24.12.31.에 지급하는 소득 *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○ (좌 동) ○ '24.1.1.~'24.12.31.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-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'24.1.1.~'25.12.31.에 지급하는 소득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법인세법

① 법인세율 조정(법인법 §55)

정 부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○ 1)최고세율을 25% → 22%로 인하, 2)중소·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% 특례세율 적용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억원 이하</td> <td>10% (중소·중견기업) 20%</td> </tr> <tr> <td>5~200억원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00억원 초과</td> <td>2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 율	5억원 이하	10% (중소·중견기업) 20%	5~200억원		200억원 초과	22%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 인하 ○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%p씩 인하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억원 이하</td> <td>9%</td> </tr> <tr> <td>2~200억원</td> <td>19%</td> </tr> <tr> <td>200~3,000억원</td> <td>21%</td> </tr> <tr> <td>3,000억원 초과</td> <td>24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-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은 10% 특례세율 적용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배주주 등이 50% 초과 지분 보유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·이자·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% 이상 	과세표준	세 율	2억원 이하	9%	2~200억원	19%	200~3,000억원	21%	3,000억원 초과	24%
과세표준	세 율																		
5억원 이하	10% (중소·중견기업) 20%																		
5~200억원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	22%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 율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9%																		
2~200억원	19%																		
200~3,000억원	21%																		
3,000억원 초과	24%																		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②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(법인법 §18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지분율</th> <th>익금불산입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%이상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30%이상 50%미만</td> <td>80%</td> </tr> <tr> <td>30%미만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분율	익금불산입률	50%이상	100%	30%이상 50%미만	80%	30%미만	30%	<input type="checkbox"/> 익금불산입률 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지분율</th> <th>익금불산입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50%이상</td> <td>100%</td> </tr> <tr> <td>20%이상 50%미만</td> <td>80%</td> </tr> <tr> <td>20%미만</td> <td>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분율	익금불산입률	50%이상	100%	20%이상 50%미만	80%	20%미만	30%
지분율	익금불산입률																
50%이상	100%																
30%이상 50%미만	80%																
30%미만	30%																
지분율	익금불산입률																
50%이상	100%																
20%이상 50%미만	80%																
20%미만	30%																
○ (특례) '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	○ (특례) '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																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③ 접대비 명칭을 “기업업무추진비”로 변경(소득법 §35, 법인법 §25 등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○ (적용시기) '24.1.1. 이후 개시 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○ (좌 동)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④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적용시기 특례(법인법 §30·§31의2·§42의3 부칙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○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○ 회계기준 전환이의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 산입 신설 ○ (적용시기) '23.1.1.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○ (좌 동) ○ (적용시기) '23.1.1. 이후 개시 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- '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'23.1.1.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< 수정이유 >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 지원

상속세 및 증여세법

①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(상증법 §18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확대 ○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→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 상향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조정 ○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한도 조정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업영위기간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 <td>200억원 → 400억원</td> </tr> <tr> <td>20년 이상 ~ 30년 미만</td> <td>300억원 → 600억원</td> </tr> <tr> <td>30년 이상</td> <td>500억원 → 1,00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업영위기간	공제한도	10년 이상 ~ 20년 미만	200억원 → 400억원	20년 이상 ~ 30년 미만	300억원 → 600억원	30년 이상	500억원 → 1,000억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업영위기간</th> <th>공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 <td>300억원</td> </tr> <tr> <td>20년 이상 ~ 30년 미만</td> <td>400억원</td> </tr> <tr> <td>30년 이상</td> <td>60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가업영위기간	공제한도	10년 이상 ~ 20년 미만	300억원	20년 이상 ~ 30년 미만	400억원	30년 이상	600억원
가업영위기간	공제한도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~ 20년 미만	200억원 → 400억원																
20년 이상 ~ 30년 미만	300억원 → 600억원																
30년 이상	500억원 → 1,000억원																
가업영위기간	공제한도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~ 20년 미만	300억원																
20년 이상 ~ 30년 미만	400억원																
30년 이상	600억원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기간 단축 ○ 7년 → 5년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요건 완화 ○ (고용 유지)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% 이상 & 7년 통산 100% 이상 → 5년 통산 90% 이상 유지 ○ (자산 유지) 가업용 자산의 20%(5년 이내 10%) → 40% 이상 처분 제한	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																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②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(상증법 §12·74·75·78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전환 * 국가지정문화재,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○ (과세방식) 비과세 → 징수유예* * 상속세 징수유예 + 양도 시 상속세 징수 ○ (납세담보)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정 등 신설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- 다만, 사전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, 위반 시 가산세 부과 ① (사전 신고)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* 위반시 상속세액의 20% 가산세 부과 ② (자료 제출)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 * 위반시 상속세액의 1% 가산세 부과

< 수정이유 >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부담 완화

< 시행시기 > '23.1.1.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

③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(상증법 §63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○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→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외 대상 축소 ○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종합부동산세법

①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(중부세법 §9)

정 부 안		수 정 안		
<input type="checkbox"/>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		<input type="checkbox"/>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		
과 세 표 준	세 율	과 세 표 준	2주택 이하*	3주택 이상
3억원 이하	0.5%	3억원 이하	0.5%	
3억원 초과 6억원 이하	0.7%	3억원 초과 6억원 이하	0.7%	
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	1.0%	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	1.0%	
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	1.3%	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	1.3%	2.0%
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.5%	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	1.5%	3.0%
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	2.0%	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	2.0%	4.0%
94억원 초과	2.7%	94억원 초과	2.7%	5.0%
법 인	2.7%	법 인	2.7%	5.0%
		*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		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주세법

①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(주세법 §8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대상) 맥주·탁주 세율 ○ (조정주기) 매년 조정 ○ (조정방식)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, ±50%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<p>-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, 출고가격 변동,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$\text{세율} = \text{직전연도 말 세율} \times (1 + \text{가격변동지수})$ </div>	<input type="checkbox"/>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좌 동) ○ (조정방식)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, ±30%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<p>- (좌 동)</p>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교육세법

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의 시행시기 보완 (교육세법 §5③·7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 (계약자적립액 +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) ○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* 아래 규정 외 「법인세법」 §40, §43 준용 <p>-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, ㉠, ㉡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㉠ 보험기간 미경과분 →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 ㉡ 중도해약분 → 중도해약한 과세기간 ○ (시행시기)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	<input type="checkbox"/> 시행시기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좌 동) <p>- '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'23년 신고분부터 적용</p>

< 수정이유 > IFRS17 조기 적용기업 지원
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
①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(국조법 §34의2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국외투과단체) ①+②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, 법인 아닌 단체 ② 설립지국 세법상 ①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·출자자,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○ (적용절차)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·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○ (적용효과)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·소득세법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소득구분 일치)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② (소득 인식시기)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

< 수정이유 > 해외 투자시 해외에서의 과세상 불이익 방지

< 시행시기 > '23.1.1. 이후 적용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
조세특례제한법

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변경(조특법 §18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내 용) 19% 단일세율*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종합소득세율(6~45%) 선택 가능 - 비과세·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○ (적용기간) 적용기간 없음 ○ (적용기한) '23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기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적용기간)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○ (좌 동)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②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(조특법 §28의4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내용)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·중견기업은 75%)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○ (대상자산) 에너지절약시설 ○ (적용기간) '23.1.1. ~ '23.12.31. 취득분

< 수정이유 >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(조특법 §30)

현행(정부안 없음)	수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청년·노인·장애인·경력단절여성 ○ (감면율) 70%(청년은 90%) ○ (감면기간) 3년(청년은 5년) ○ (대상업종) 농어업, 제조업, 도매업, 음식점업 등 ○ (감면한도) 연간 150만원 ○ (적용기한) '23.12.31 	<input type="checkbox"/> 감면한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감면한도) 연간 200만원 ○ (좌 동)

< 수정이유 > 중소기업 취업 지원

< 시행시기 > '23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④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(조특법 §30의5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·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·매입한 사업용 자산이 자산가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0% 초과 → 50%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⑤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(조특법 §30의6)

정 부 안	수 정 안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→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한도 등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한도) 100억원 → 기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1,000억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기업영위기간</th> <th>적용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 <td>400억원</td> </tr> <tr> <td>20년 이상 ~ 30년 미만</td> <td>600억원</td> </tr> <tr> <td>30년 이상</td> <td>1,00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업영위기간	적용한도	10년 이상 ~ 20년 미만	400억원	20년 이상 ~ 30년 미만	600억원	30년 이상	1,000억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한도 조정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기업영위기간</th> <th>적용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0년 이상 ~ 20년 미만</td> <td>300억원</td> </tr> <tr> <td>20년 이상 ~ 30년 미만</td> <td>400억원</td> </tr> <tr> <td>30년 이상</td> <td>600억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기업영위기간	적용한도	10년 이상 ~ 20년 미만	300억원	20년 이상 ~ 30년 미만	400억원	30년 이상	600억원
기업영위기간	적용한도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~ 20년 미만	400억원																
20년 이상 ~ 30년 미만	600억원																
30년 이상	1,000억원																
기업영위기간	적용한도																
10년 이상 ~ 20년 미만	300억원																
20년 이상 ~ 30년 미만	400억원																
30년 이상	600억원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세율) 30억원 이하 : 10% 30억원 초과 : 20% → 60억원 이하 : 10% 60억원 초과 : 2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사후관리 기간 단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7년 → 5년 	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																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대상에 체육단체 추가
(조특법 §74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대상)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도서관·박물관·미술관 운영법인, 국립대학병원, 지방의료원,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○ (손금한도) 이자·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% ○ (적용기한) '25.12.31.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로부터 인·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* *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

< 수정이유 > 체육단체 활동 지원

< 적용시기 > '23.1.1.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⑦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91의22)

현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청년도약계좌* 과세특례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○ (가입요건) ①만 19~34세 ②총급여 7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 *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○ (세제지원)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 ○ (운용재산) 예·적금, 펀드, 국내상장주식 등 ○ (납입한도) 연 840만원 ○ (의무가입기간) 5년 *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○ (적용기한) '25.12.31.까지 가입분

< 수정이유 >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

⑧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(조특법 §95의2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○ (공제율) 월세액의 10%·12%* → 12%·15%*로 상향 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자 ○ (공제한도) 750만원 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제율 상향 폭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12%·15%* → 15%·17%* * (좌 동) ○ (좌 동)

< 수정이유 >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
< 적용시기 > '23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9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(조특법 §99의4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○ (요 건) ①·②·③ 모두 충족 ① (보유기간) 3년 이상 ② (소재지) 수도권, 도시지역 등 제외 ③ (가 액) 기준시가 3억원 (한옥 4억원) 이하 ○ (지원내용)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○ (적용기한) '25.12.31.까지 취득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재지 요건 완화 ○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① (좌 동) ② 수도권, 도시지역* 등 제외 *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③ (좌 동) ○ (좌 동) ○ (좌 동)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(PEF)의 비거주자·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변경(조특법 §100조의18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○ (일반 동업자)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원천 별로 구분하여 과세 ○ (수동적 동업자) 배분받은 소득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- 다만,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·기금 등으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 원천에 따라 과세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○ (좌 동) - 다만,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 원천에 따라 과세

< 수정이유 > 국내 PEF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지원

< 시행시기 > '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11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축소 및 일몰연장(조특법 §100조의32)

정 부 안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○ (적용대상)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(중소기업 제외)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○ (적용기한) '22.12.31.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○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○ '25.12.31.

< 수정이유 > 중견기업 등을 제외하여 세부담 완화

12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조특법 §104의5)

현행(정부안 없음)	수정안
<신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대상)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○ (공제금액)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○ (공제한도) 연간 300만원(세무회계법인 600만원), 최소공제액 1만원 ○ (적용기간) '24.1.1. ~ '25.12.31.

< 수정이유 >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

13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(조특법 §121의13)

정 부 안	수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본 면세한도) \$800 이하 ○ (별도 면세한도) 술·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술) 2병(2ℓ · \$400이하) - (담배) 200개비 ○ (적용시기) '23.4.1. 이후 판매·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	<input type="checkbox"/> 적용시기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'23.1.1. 이후 판매·구입하는 분부터 적용

< 수정이유 > 국회심의 결과 반영

14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(조특법 §121의17, §121의19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내용)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·법인세를 감면 ○ (감면적용 특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도시,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감면율) 3년 100% + 2년 50% (사업시행자는 3년 50% + 2년 25%) ○ (적용기한) '23.12.31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추 가>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만금투자진흥지구 ○ (좌 동) ○ (좌 동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'25.12.31.

< 수정이유 >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지역 투자 유인 제고

< 시행시기 > '23.1.1.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

15 금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(조특법 §126의2)

정 부 안	수정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제대상)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'21년 대비 5% 초과분 ○ (공제율) 10% ○ (공제한도) 100만원 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공제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 동) ○ 10% → 20% ○ (좌 동)

< 수정이유 > 물가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

관세법

① 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가능 사유 확대 등(관세법 §116)

정 부 안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제공 ○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·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, 다음 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❶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❷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❸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·징수, 통관 또는 질문·검사에 필요한 경우 ❹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❺ 국가행정기관, 지자체 등이 급부·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<추 가>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공가능 사유 추가 ○ (좌 동) (좌 동) ❺ 국가행정기관, 지자체, 민간은행 등이 급부·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❻ 무역거래자의 거래, 지급, 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(좌 동)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의 사용 시 과태료 부과(2천만원 이하)

< 수정이유 > 국회 심의결과 반영

< 시행시기 > '23.4.1. 시행

②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·출연의 법적 근거 신설(관세법 §233의2)

현 행(정부안 없음)	수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·분석 업무의 위탁 가능	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○ (설립목적)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·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○ (출연·보조)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 가능 ○ (수행사업) 원산지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, 원산지 검증 및 전문인력양성 등* * ❶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·정책·활용 관련 정보 수집·분석·제공 ❷ 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 ❸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, 원산지 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❹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,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❺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 ○ (지도·감독)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

< 수정이유 > 원산지 관련 업무의 안정적 수행

< 시행시기 > '23.7.1. 시행

③ 관세무역데이터분석센터 설치 근거 신설(관세법 §322⑩~⑫)

현행(정부안 없음)	수정안
<p><신설>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세무역데이터* 제공 허용</p> <p>*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·가공 ·분석한 데이터</p> <p>○ (제공목적)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</p> <p>○ (제공대상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의원 - 국회사무총장, 국회도서관장, 예산정책처장, 입법조사처장 등 - 중앙행정기관 - 지방자치단체 - 정부출연연구기관 <p>○ (제공장소) 관세청 내 설치된 특정구역(분석센터)</p> <p>○ (목적외 사용금지) 관세무역 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 사용금지</p>

< 수정이유 >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관세정책 평가·연구 지원

< 시행시기 > '23.4.1. 시행